

30년 이상 보존기록물의 기록재료(제38조 관련)

구 분	재 료 기 준	비 고
1. 종 이	- 문서의 작성은 한지류 및 보존용지 1종인 보존복사용지, 보존백상지, 보존아트지로 작성 - 문서의 보관은 보존용 판지로 제작된 장기보존용 표지 또는 보관용기에 보관	- 보존용지 1종 규격 화학펄프 100퍼센트, pH 7.5 이상, 탄산칼슘 2퍼센트 이상 - 보존용 판지 규격 pH 7.5 이상, 탄산칼슘 3퍼센트 이상
2. 잉 크	- 먹, 탄소형·안료형 잉크, 보존용 잉크 사용	- pH 7.0 이상, 내광성 4호 이상, 산·알칼리용액(표백제 포함)에 무변화
3. 필기구	- 사무용프린터용 토너, 탄소형 싸인펜, 흑색 안료형 필기구류 및 보존용 필기구류	- pH 7.0 이상, 내광성 4호 이상, 산·알칼리용액(표백제 포함)에 무변화